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172호
나. 발의자 : 남창진 의원(찬성자 21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4. 12.31.)하여 기존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의 지원'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다자녀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2025.8.1.) 「관광진흥법」 상 관광 활동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의되었음.

나. 다자녀가구의 관광 현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2024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총 국내여행 횟수는 291,825천회, 여행 일수는 448,498천일이였으며, 관광여행 동반자 수는 평균 3.6명으로 집계되었음.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60.5%), ‘친구/연인’(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여행한 경우는 전체 ‘가족’ 비중의 50.6%이였으며, 이 중 성인 미만의 자녀와 여행한 것은 38.9%으로 나타남.

- 또한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에 있어 가장 큰 불편으로는 숙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호텔의 기본 2인 1실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인원 혹은 객실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숙박하기에 적합한 가족호텔업¹⁾의 경우 전체

1)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 2,731개소 중 152개소(5.6%)로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관광호텔업	316	107	29	89	15	16	21	2	121	48	15	16	30	46	44	53	117	1,085
수상관광호텔업	-	-	-	-	-	-	-	-	-	-	-	-	-	-	-	-	-	0
한국전통호텔업	-	-	-	2	-	-	-	-	1	2	-	-	2	2	1	-	1	11
기족호텔업	17	1	-	2	-	1	-	-	14	13	2	4	7	9	4	18	60	152
호스텔업	139	176	8	102	1	-	5	2	29	94	11	6	28	337	43	34	165	1,180
소형호텔업	9	6	-	3	-	-	-	-	10	6	-	1	5	2	4	5	5	56
의료관광호텔업	1	-	-	-	-	-	-	-	-	-	-	-	-	-	-	-	-	1
호텔업 합계	482	290	37	198	16	17	26	4	175	163	28	27	72	396	96	110	348	2,485
휴양콘도미니엄업	1	8	-	2	-	-	-	1	21	76	6	16	5	12	16	17	65	246
총계	483	298	37	200	16	17	26	5	196	239	34	43	77	408	112	127	413	2,731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관광약자에 다자녀를 추가하고 관광활동 지원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자녀가구의 여행 전반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게 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정책이 확대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제2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u>임신</u>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 <u>임신, 다자녀</u>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관광약자의 범위에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키고자 하며, 이는 최근(2025.8.1.)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또한 관광은 편리한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정의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관광약자’의 개념에 다자녀가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관광약자의 범위에 ‘다자녀’로만 할 경우 해석에 있어 법령상의 다자녀 범위²⁾가 아닌 사람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 계층, 장애, 노령, <u>임신</u>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 ----- <u>임신, 다</u> <u>자녀</u> ----- ----- -----.	----- <u>임신, 다</u> <u>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관광활동지원대상 추가(안 제5조)

- 동 개정안은 기존의 관광활동지원의 범위에 법령과 같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현행 조례는 장애를 포함하여 관광취약계층, 노령, 임신 등의 사람을 관광약자로 하고 있으므로 관광 활동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노령자와 다자녀가구를 추가로 병기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관광약자로 대체하는 것이 입법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u>장애인 관광활동지원</u>)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u>장애인의 관광활동</u>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장애인의 여행</u>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u>장애인의 관광 지원</u> 사업과 <u>장애인 관광 지원</u>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u>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u>) ① ----- <u>장애인·고령자</u>-----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p> <p>② ----- <u>장애인·고령자의 여행</u> ----- <u>장애인·고령자의 관광</u> --- <u>장애인·고령자 관광</u> ----- -----.</p> <p>③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또한 개정안의 제5조제3항은 장에게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바, 이미 기존 제3조 및 제5조제1항을 통해 시장에게 관광약자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책 강구는 중복으로 판단되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u>장애인 관광활동지원</u>)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p>	<p>제5조(<u>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u>) ① ----- 장애인·고령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p>	<p>제5조(<u>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u>) ① ----- 관광약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장애인의 여행</u>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u>장애인의 관광</u> 지원 사업과 <u>장애인 관광</u>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신 설></u></p>	<p>-----.</p> <p>② ----- <u>장애인·고령자의 여행</u> -----</p> <p>----- <u>장애인·고령자의 관광</u> --- <u>장애인·고령자 관광</u> -----</p> <p>-----.</p> <p>③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 <u>관광약자의 여행</u> -----</p> <p>----- <u>관광약자의 관광</u> -----</p> <p>----- <u>관광약자 관광</u> -----</p> <p>-----.</p> <p><u><삭 제></u></p>

의안번호
3172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남창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 고령자 관광활동의 지원’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추가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개정(‘25.1.31.)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약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다자녀를 추가(안 제2조 제2호) 제5조의 제목 “(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장애인 · 고령자 · 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으로 변경(안 제5조)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3항) 관광활동지원을 위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필요한 시책 강구” → “종합적인 시책 강구”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 10. 2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발의자 : 남창진 의원) -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기덕, 김길영 등 21명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상의 관광약자 정의는 경제적 요인 및 물리적 제약 중점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다자녀를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전국 17시도 유사 조례 중 관광약자 정의에 다자녀를 포함한 사례 없음 관광활동 지원대상에 고령자와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 다만, 시장 의무사항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정책수행에 문제가 없어, 상위법과 동일한 문언인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쪽 및 의견제시 9-0148(2018.7.26.): 상위법의 문구와 동일하게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관광약자 정의와 일부 개정사항은 현재 문언을 유지하면서, 고령자 · 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함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견에 따라 안건 소관 상임위와 협의 예정(‘25. 12월 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현윤성(☎2133-2781)	담당	강성욱(☎2133-2787)